



“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시다.”

대 법 원

우 137-7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 전화(02)3480-1279 / 전송(02)533-2868 / 9314208@scourt.go.kr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제2심의관 노재호 / 법원사무관 박기진 / 담당자 김세진

문서번호 인사총괄심의관-3552

시행일자 2015. 8. 3.

(경 유)

수 신 참여연대

참 조 사법감시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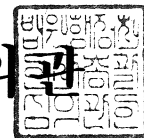
제 목 민원에 대한 회신

선 결			지 시	
접	일 시 간		결 재 · 공 람	
수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1. 법원민원 처리건과 관련하여 2015. 6. 10.자로 우리 처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붙임 : 답변 1부. 끝.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 “법관 신규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 대법원규칙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귀 기관의 2015. 6. 10.자 청원서는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대법원은 법관 신규임용 대상자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사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여, 신원조사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종래의 비밀보호규칙상 신원조사 대상에서 법관 신규임용 대상자를 제외하고 법관인사규칙에 법관 신규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2015. 7. 28. 법관인사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 신원조사의 목적인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를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국정원을 통해 법관 신규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부득이하지만, 신원조사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에 유해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대법원규칙을 개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종전에 신원조사의 목적 또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던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신원조사의 목적을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라고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신원조사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는 조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할 때 대상자나 주변 인물들에 대한 불필요하거나 부적절

한 대면조사 등으로 인하여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신원조사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실무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신원조사 관련 법관인사규칙 개정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은 첨부한 설명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법부에 대한 귀 기관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소중한 의견도 유념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조사 관련 법관인사규칙 개정[2015. 7. 28. 시행] 설명자료

1. 개정이유

■ 판사 신규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종전에는 비밀보호규칙에 따라 이루어져 왔으나, 법관인사규칙에 별도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목적, 대상자, 한계, 결과의 활용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원조사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신원조사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

- 판사는 헌법상 독립이 보장된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특수성이 있는 점을 고려

2. 개정내용 ☞ 신원조사 근거규정으로 법관인사규칙 제7조의2 신설

가. 신원조사의 목적 및 대상자

비밀보호규칙	
종 전	개 정
제65조(신원조사) <u>국가보안을 위하여 제66조에 정한 자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u>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종전과 같음)
제66조(신원조사의 대상 및 요청자) ① 법원행정처장은 다음에 정하는 자의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 2. <u>판사 및 동등한 임용예정자</u>	(제66조제1항제2호 삭제) ⇨ <u>판사 신규임용 대상자는 비밀보호규칙상 신원조사 대상에서 제외</u>

법관인사규칙	
종 전	개 정
<신 설>	제7조의2(신원조사) ① <u>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를 위하여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의 대상이 된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한다.</u>

■ 신원조사의 목적

- 신원조사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
 - 모든 공무원은 임용 전에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 측면에서 검증이 필요하고, 판사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직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 종전에는 “국가보안을 위하여 …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비밀보호규칙 제65조),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부분을 삭제한 것임

■ 신원조사의 대상자

- 신원조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의 대상이 된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
 -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법원조직법 제41조 제3항), 현행 실무상 서류심사, 중간적격심사, 최종적격심사 시 각각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음 ⇨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에 유해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도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의 및 대법관회의 논의 시 검토되어야 함
 - 법관인사위원회는 위원 11명 중 8명이 법관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

으므로 신원조사의 결과를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할 경우 신원조사 결과 활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종전에는 판사 신규임용 과정에서 신원조사의 대상이 '판사 임용예정자'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비밀보호규칙 제66조 제1항 제2호), '임용예정자'라는 표현은 대법관회의 동의까지 얻어 임용이 내정 또는 확정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한 것임

나. 신원조사 기관

<신 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
--------------------	---

- 신원조사 기관은 종전과 같이 국가정보원으로 함
 -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의 고유한 업무 중 하나임 ☞ 국가정보원의 직무에는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바(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공무원 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 업무도 여기에 해당함
- 한편, 신원조사 의뢰의 주체는 종전(비밀보호규칙 제66조 제1항 참조)과 마찬가지로 법원행정처장으로 함

다. 신원조사 의뢰 방식

<신 설>	③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의뢰한다. 1. 대상자 명단 2.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서식의 신원진술서 1부
--------------------	--

	3.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요건의 사진 1매
--	--------------------------

라. 신원조사의 한계

<신 설>	④ 신원조사는 <u>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u>
-------	--

- 신원조사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 ☞ 중전에 비밀보호규칙에는 해당 규정이 없었음
- 대법원이 판사 신규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의뢰하는 목적은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에 유해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임 ⇨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 방식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내포함

마. 신원조사 결과의 통보

<신 설>	⑤ 신원조사의 의뢰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

- 중전의 실무(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와 같음 ☞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무를 지우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 임용절차 지연 방지를 위한 훈시규정임

바. 신원조사 결과의 활용

<신 설>	⑥ <u>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에 현저히 유해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임용 여부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u>
--------------------	--

- 신원조사 결과를 기초로 임용을 거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에 현저히 유해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이어야 한다는 취지임 ☞ 국가정보원이 신원조사를 통해 판사 신규임용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규정임
-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적격심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법원장의 임명 여부 결정 등에 모두 적용되는 원칙임

3. 신원조사 관련 기타 개선방안

- **1** 신원조사 의뢰 시 법관인사규칙 제7조의2 규정과 취지를 알리고 신원조사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임
- **2**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 의 대상자에 한하여 신원조사를 위한 신원진술서 등을 제출받을 예정이고, 그때 ‘신원조사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송부할 예정임
- **3** 신원조사 의뢰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상자들을 통해 신원조사 실시현황 점검 예정임

법관인사규칙 신·구 조문 대비표

종 전	개 정
<u><신 설></u>	<u>제7조의2(신원조사) ①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를 위하여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의 대상이 된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한다.</u> <u>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u> <u>③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의뢰한다.</u> <u>1. 대상자 명단</u> <u>2.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서식의 신원진술서 1부</u> <u>3.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요건의 사진 1매</u> <u>④ 신원조사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u> <u>⑤ 신원조사의 의뢰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조사</u>

종 전	개 정
	<u>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u> <u>⑥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에 현저히 유해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임용 여부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u>